

과학기술과 ICT로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.



#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

수신 LMO 연구 및 취급 관련기관

(경유)

제목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신규 연구시설 신고절차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

가.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(연구시설의 설치·운영), 동법 시행령 제23조(연구시설의 설치·운영허가 및 신고) 및 통합고시 제9-5조

나.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-3524('20.12.29., 2021년 시험·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)

3. 위 호 관련하여, 과기정통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신규 연구시설 신고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변경 사유 : LMO 연구시설 설치·운영기준 미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기관이 증가하여,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제적 관리 강화 필요

※ 시정명령 받은 기관(개) : ('17년) 38기관 → ('18년) 81기관 → ('19년) 108기관

나. 변경 사항 : 신규 연구시설 신고 수리 및 확인서 발급 전, 사전 현장점검 실시

기 존	변 경
(연구기관) 연구시설 신고서류 제출·접수	(연구기관) 연구시설 신고서류 제출·접수
↓	↓
(과기정통부) ① 제출 서류 검토·확인 ②신고 수리 및 확인서 발급(60일 이내)	(과기정통부) ① 제출 서류 검토·확인 ②사전 현장점검 및 확인* ③ 신고 수리 및 확인서 발급(60일 이내)

\* 사전 현장점검 및 확인 : 신고 연구기관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후, 담당자(과기정통부 또는 위탁기관)가 해당 신고시설을 방문하여 LMO 연구시설 등급별 설치·운영 이행 여부 확인 → 확인 결과 미비사항 발생시 보완조치 완료 후에 신고 수리·확인서 발급 예정

※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기간은 심사기간(60일)에 미포함(통합고시 제9-5조제8항)

다. 변경 일시 : 2021년 1월 1일 ~ 추가 변경 사항 발생시

라. 문의 :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(044-202-4858, 4859)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(043-240-6461, 6463, 6424)

4. 더불어,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수의 시설을 신고할 계획이 있는 연구기관은 사전에 문의하시어 현장점검 일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 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

주무관

**황주익**

사무관 **최승혁**

과학기술안전대결12/29  
기반팀장 **강호원**

협조자

시행 과학기술안전기반팀-3534 (2020-12-29)      접수 산학연구팀(천안)-1287(2020.12.30)  
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, (어진동)      / http://www.msit.go.kr  
 전화 044-202-4859      전송044-202-6029      / hwangjuik1@msit.go.kr      / 공개  
 생각은 창의적으로, 행정은 적극적으로!

접수등록번호	
접수기록물철	제도/규정

결재